

#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건축정책을 시작하다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

## 건축정책의 기본 틀, 「건축기본법」의 제정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과 사회적 공공성 확보, 문화적 공공성 실현이라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건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급속한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 체제하에서 철저히 민간의 영역으로, 개인의 욕망과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던 우리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무한한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생활 전반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건축기본법」에서는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건축정책을 국가적 정책의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 민간전문가 참여 및 설계공모 활성화 등 다양한 건축문화 진흥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양한 건축정책을 심의하고 국가적인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최근에는 「건축법」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2015.8.11.),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였다.

## 건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정비

「건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로 건축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 혹은 정비되었는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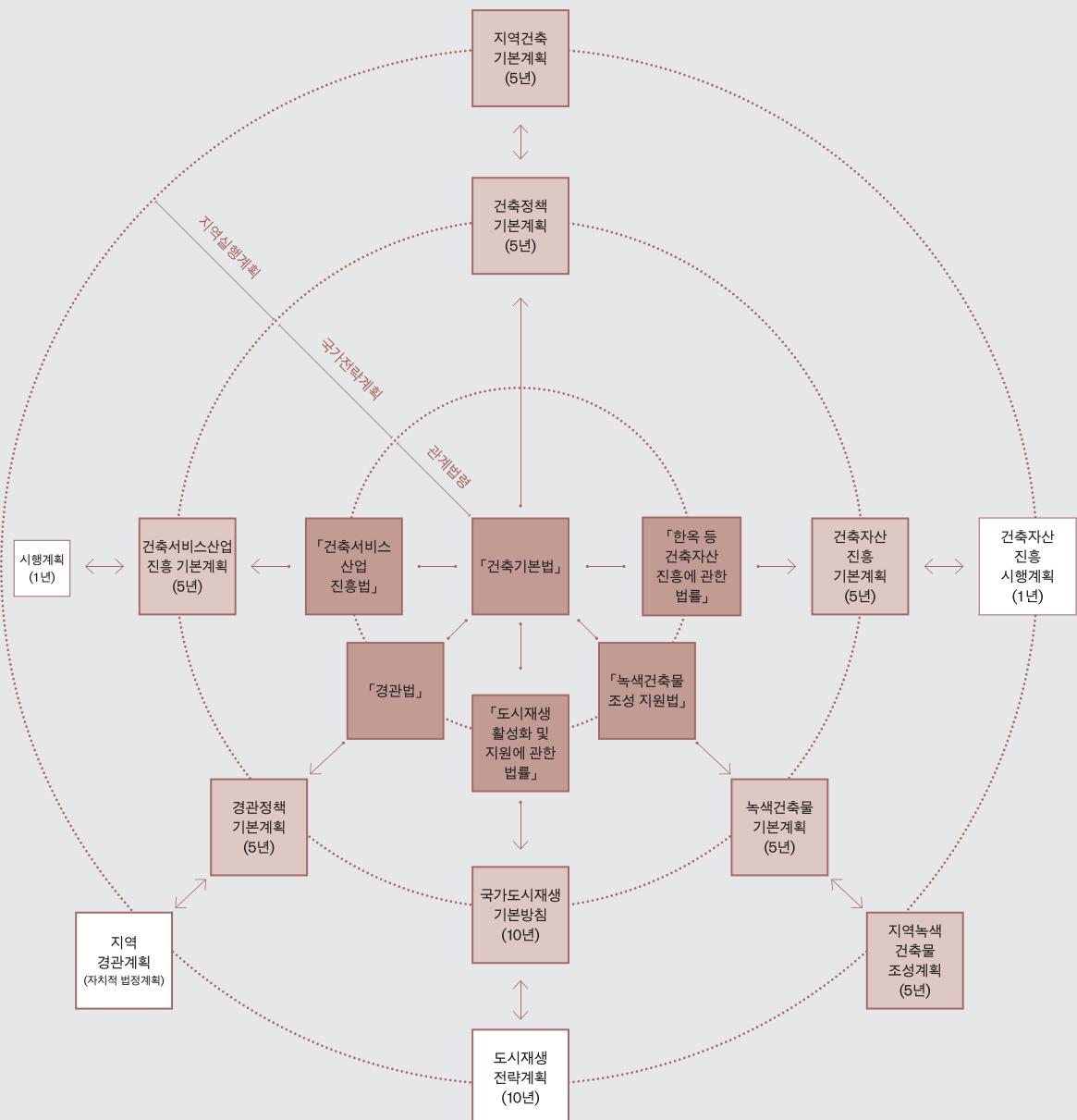
### 「건축기본법」개요

목적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 이바지를 목적으로 제정(2007.12)						
기본 방향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주요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d3d3d3;">건축정책의 수립</th><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d3d3d3;">건축문화의 진흥</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td><td style="padding: 5px;">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 설계공모의 시행</td></tr> </tbody> </table>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문화의 진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 설계공모의 시행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문화의 진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 설계공모의 시행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건축규정의 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건축정책 국회보고 / 건축 기본조사 지역건축위원회 구성·운영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이를 통해 건축정책을 필두로 건축·도시 분야 연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틀이 갖춰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계획, 건축자산 진흥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경관기본계획 등이 수립 또는 시행 중이다. 또한 제도의 틀 속에서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공공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센터, 국가한옥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건축정책 지원 전담기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건축정책 관련 법령 및 계획 간의 상관관계

- 법정 의무계획
- 자체 법정계획(의무X)



출처: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재구성

## 건축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중장기 로드맵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인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으로 위계가 설정되어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중장기 건축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수립권자이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이 이루어진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의 틀 안에서 지역의 건축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역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시·도시지사가 그 수립권자로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에 해당하며, 기초건축기본계획은 기초단체장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은 현재 2차 계획이 시행 중이며,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수립 시기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17년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1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경기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1차 계획의 시행이 완료된 시점으로 현재 2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은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를 비전으로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환경디자인 향상’, ‘건축·도시 환경개선’, ‘녹색 건축·도시 구현’,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여섯 가지 전략과 이를 구체화한 18개 실천과제 (세부 실천과제는 113개)로 이루어졌다.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는 「건축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2년 단위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113개 세부 실천과제 중 108 개 과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이룩한 대표적 성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3.2.) 제정 등 관련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 것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54건), 도시

재생 선도사업(13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38건)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선도·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건축제도를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로 개편한 것과 더불어 건축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자체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한 것(1,171개 숨은 규제 중 1,139개 폐지)도 중요한 성과로 들 수 있다.

나아가 국민들의 일상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제도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간소음 방지 기준(2015.5.), 실내건축 기준(2015.10.), 범죄예방 설계 기준(2015.4.),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2015.12.) 등 각종 건축기준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을 비전으로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체계 구축’, ‘건축 리뉴얼 촉진 활성화’, ‘공공건축 효율화’, ‘건축 서비스산업 활성화’, ‘녹색건축 구현’,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국토경관 향상’, ‘통일한국 건축비전 제시’를 9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24개 실천과제를 설정하였다.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행을 통한 정부 정책 지원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행 과정에서는 지난 제1차 계획을 통해 달성한 건축도시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부문에서의 기반구축 성과를民間 영역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축도시 관련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건축도시 분야에서는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방식을 탈피한 지역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나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의 실현, 어린이·노약자 등과 관련한 전 생애 단계에서의 차별 없는 공간복지 실현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